

Information

No. 24-01

Date. 2009.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저희 삼광의료재단을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6호에 의거하여 삼광의료재단은 유형별 분류 중 의원에 해당하므로 점수당 단가를 63.4원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63.4원
「의료법」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3.4원
「의료법」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의료법」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의료법」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	88.2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4.5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3.7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은 감동의 시작 그리고 고마움으로부터의 시작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60 삼광빌딩
Tel.02-3497-5100(代) Fax.02-3497-5249
Homepage. <http://www.smlab.co.kr>